

# Korean Tax Update

January 2020, Issue 67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19.12 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 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문보기]

국세청은 2020 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함.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됨.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2.3 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전문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 일 밝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 년 12 월 31 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 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20 년 1 월 1 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20 년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5 일 공포·시행될 예정인 바, '20 년 1 월 1 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됨.

### 국세청,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전문보기]

국세청은 1.29.(수) 2020 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함.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함.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판례]

**이 사건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국내원천 배당 소득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 두 35854 판결

- 금융기관 등인 원고들이 룩셈부르크의 공모펀드(SICAV)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였다가 피고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룩 조세조약 제 4 조 제 1 항의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SICAV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 투자자와 투자대상, 원고들의 이 사건 SICAV에 대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지급, 이 사건 SICAV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SICAV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한·룩 조세조약 제 28 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1929년 7월 31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는 바, 이 사건 SICAV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룩 조세조약 제 28 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이 사건 SICAV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룩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 11 조 제 2 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 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시기 (국승)**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 두 53075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 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7 두 66824 등 참조),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성립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 본

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변동시기로 규정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는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구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2 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되어야 하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4 항은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심판례]

###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8 서 4565, 2019. 12. 19.

-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한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결정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2002.12.26. 설립된 후, 2012.7.1. 합병존속법인과 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합병존속법인이 합병되기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합병존속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었고,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합병존속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나, 반대로 존속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거꾸로 소멸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경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법인세 환급결정한 것을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물적문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취소)

조심 2019 서 2775, 2019. 12. 19.

- 2009.5.21.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 4 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을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룹광고비를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8 서 4581, 2019. 12. 19.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나,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그룹광고비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선지급이고 이는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인 000 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설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과세처분시에는 각 계열사가 부담한 공동광고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용역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저가로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쟁점상표권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각 계열사들이 부담한 공동광고비가 실질상으로는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이를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하나의 실질이 서로 다른 세목에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와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이 제한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지 3792, 2019. 12. 24.

-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 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m<sup>2</sup>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1.12.22. 쟁점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2.8.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2015.1.30.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14 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후에 주식반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지 2085, 2019. 12. 24.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무변론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 두 38345 판결, 같은 뜻임) 이므로, 청구인이 2015.6.30. 000 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사안에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인 경우,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인 2851, 2019. 12. 26.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7 서 1078 합동회의 결정, 대법원 2012 두 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그 목적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다고 하였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및 대금 정산 등 처분 관련 사항도 정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수탁자가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및 우선수익자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예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480, 2019. 10. 17.

-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제 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대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 10. 23.

-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 12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 조의 3 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2019-국제세원-3823, 2019. 11. 27.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관련 conference 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 93 조 제 6 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이후,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 12. 11.

-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 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 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 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 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A 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 47 조의 2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 12. 18.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 조의 3 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2020. 1. 3.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 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 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 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 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A 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 조를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 1. 10.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이 국내외 고객에게 국제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항공기 관련 부품의 보관용역, 항공기 국내에 도착 시 항공기 유지 보수 용역, 국내 체류 중인 승무원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 및 제 12 조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 [기고] BUSINESS Watch,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활용 방법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